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747-01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

Competence Evaluation for Introduction of Grading
Program of Certification Bodies

최종보고서(요약용)
(2017.4.)

연구기관 |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4월

연구 담당

유병덕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인증기관 등급제 시행 절차
김난영	연구원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 방법
허종석	연구원	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평가(현장 평가)
이승영	연구원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지표 타당성 분석, 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평가(경영, 서면 평가)
장진선	연구원	인증기관 운영 현황

목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3. 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평가의 개요	4
제2장. 인증기관 운영 현황	
1.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7
2. 인증기관 현황	9
제3장. 시범평가 실시 및 조사방법 검토	
1. 시범 평가 개요	11
2. 시범 평가의 과정	13
3. 평가 방법	17
4. 지표별 평가 방법	20
5. 지표별 평가 방법의 최종 도출	30
6. 기타 고려 사항	33
제4장. 득점 기준의 조정 및 최종 평가 결과	
1. 득점 기준 조정의 필요성	35
2. 득점 구간 교정	36
3. 최종 평가 지표	39
제5장. 인증기관 등급제 제도화 방안	
1. 등급제 시행의 목적	41
2. 평가기관의 운영 원칙	41
3. 등급결정심의위원회	42
4. 평가의 원칙과 절차	42
5. 평가 결과의 적용 방법	45
제6장. 결론 및 기타 고려사항	
1. 평가 결과	46
2. 경영 평가 결과	47

3. 해외 소재 인증기관의 등급제 적용 방안	48
4. 등급제 운영 고시안	49

표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인증기관 운영 현황

표 2-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			8

3. 시범평가 실시 및 조사방법 검토

표 3-1. 인증사업	매출비율	지표	
.....		20	
표 3-2. 인증기관	행정처분	지표	
.....		20	
표 3-3. 기관	과태료	부과	지표
.....			21
표 3-4. 자체	행정처분	실적	지표
.....			21
표 3-5. 인증	부적합률	지표	
.....			21
표 3-6. 사후관리	빈도	지표	
.....			22
표 3-7. 사업자당	투입	인력	지표
.....			22
표 3-8. 이중체크	적발	비율	
.....			22
표 3-9. 교육훈련	투입량	지표	
.....			23
표 3-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			23
표 3-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			24
표 3-12. 인증	갱신율	지표	
.....			24
표 3-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			24
표 3-14. 인증	건수	지표	

6. 결론 및 기타 고려사항

표 6-1. 최종

등급

분포

.....

46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1. 인증기관 등급제 적용에 따른 시범적 적용 필요

-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이 높은 인증기관의 육성을 통하여 친환경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 소비자 신뢰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대와 발전의 바탕이 됨
- 선행 연구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¹⁾」을 통하여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에 대한 연구와 민간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등급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되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²⁾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6.12.2. 공포, '17.6.2. 시행)을 통하여 인증기관 등급제 시행의 근거 마련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1.2. 등급제 도입을 위한 객관적인 인증기관 역량 평가 체계 구축

1)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6.12.5.

-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경영 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필수
- 인증기관의 조직 유형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서 인증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체계와 현실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1.3. 인증기관별 경영상태 분석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 방안

- 인증기관 조직 유형별 특성과 경영상태 분석, 인증기관별 경영상태 분석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운영 실태 파악 ⇒ 인증기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인증기관 조직 유형별 특성에 따른 경영상태 분석
 - 인증기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생산성, 현금흐름 등을 평가
- 재무평가 내용과 등급 결과에 대한 관계 분석을 통하여 인증기관의 운영개선 방안 제시
- 인증기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규모화, 전문화,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등급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증기관의 운영 방향 제시

2. 연구 목적

- 민간 인증기관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수립
 - 농식품부(2016)는 농관원의 인증업무 민간이양을 통하여 인증체계를 단일화하기로 함
 - 인증업무 민간이양에 따라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의 개선이 요구됨
 - ⇒ 등급제를 통한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선행연구³⁾를 통하여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후속 연구)를 통하여 실제 인증기관 적용 시 객관적인 평가체계 수립

- 인증기관 등급제에 이용되는 평가지표의 평가방법 마련
 -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시범 평가 실시를 통하여 선행연구⁴⁾에서 설계된 평가 지표에 대한 검토 및 개선

-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시범 평가 실시
 - 평가지표별 인증기관 평가 원 데이터 및 배점 결과 분석
 - 평가지표별 인증기관 경영 상태에 대한 해석과 시사점 제시
 - 평가지표별 변별력에 대한 검토

3)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4)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3. 인증기관 등급제 시범 평가의 개요

○ 시범 평가의 목적

- 인증기관 등급제 시행 시 적용되는 평가지표(기존 제시된 23개 지표)의 적합성 검토
- 각 평가지표 별 객관적인 평가 방법 설정
- 우리나라 친환경인증 제도의 발전과 인증기관의 경영실태 파악

○ 평가 내용 및 방법

1. 평가 내용 : 본 조사의 내용은 민간 인증기관들의 일반현황, 경영실적, 인력관리, 인증품질관리에 대한 자료 및 친환경인증에 대한 인증기관들의 인식을 수집하여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지표에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
 - 일반현황, 경영실적, 인력관리, 인증품질관리에 관한 문항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구성
 - 친환경인증에 대한 인증기관 인식의 경우 척도를 사용하여 각각의 문항에 대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구성
2. 평가범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 기관으로 인정되었으며 국내에 소재하는 전국 61개 민간 인증기관 대상
3. 평가대상 기간 : 201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인증기관의 재무 및 일반현황, 경영실적, 인력관리, 인증품질관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함
4. 분석방법
 - 인증실적, 사후관리실적, 업무정지 실태, 재무 및 경영 성과 등 인증기관 운영에 관계된 자료를 수집 및 데이터화
 - 등급제 점수 환산을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평가지표별 계산식에 대입하여 점수 부여

- 각 지표의 타당성, 조사방법, 점수분포를 분석하여 수정된 등급제 최종 지표에 따른 교정 및 평가 결과 도출

○ 평가체계

1. 평가대상 : 국내 소재 친환경농산물 등의 민간 인증기관
2. 유효 대상자 수 : 61개 인증기관⁵⁾ 중 61개 기관(100%)
3. 기관별 평가 횟수 : 2회(서면평가, 현장평가)
4. 평가 기간
 - 서면평가 및 자료 제출: 2016년 12월 23일 ~ 2017년 1월 15일
 - 현장평가: 2017년 1월 18일 ~ 2017년 3월 9일
5. 평가 방법
 - 설문지 배포 및 회수(온라인 이메일 및 팩스 활용)
 -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및 평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의 자료 수집과 평가

5) 2017년 3월 3일자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취소 반영하여 최종 61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제2장 인증기관 운영 현황

1.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 실적도 포함되어 있음

1.1.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⁶⁾

- 2016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이 있는 인증기관은 64개
- 2016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는 총 22,954건으로 61,946농가가 인증받았으며, 한 건당 평균 농가수는 약 2.6호⁷⁾
- 친환경농산물 국내 인증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도 인증 농가 수와 면적이 2015년 대비 각 8.3%, 4%로 감소하였으나 인증 건수는 3.2% 증가. 이는 단체 인증 중심의 저농약 폐지⁸⁾로 농가수와 면적이 감소한 것에 비하여 유기, 무농약 인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6)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7)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기관별)

8) 2015.12.31. 이후로 저농약 인증이 폐지됨

- 친환경농산물의 전체 출하량은 2009~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유기, 무농약 농산물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각 16.5%, 26.1% 상승

표2-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율 (%) ⁹⁾
유기	농가수(호)	9,430	10,790	13,376	16,733	13,957	11,633	11,611	12,896	4.6
	면적(ha)	13,343	15,517	19,311	25,467	21,206	18,306	18,136	19,862	5.8
	출하량(톤)	108,810	122,243	123,314	168,256	116,991	95,694	94,430	110,054	0.2
무농약	농가수(호)	63,653	83,136	89,765	90,325	89,992	56,756	48,407	49,050	-3.7
	면적(ha)	71,039	94,533	95,253	101,657	98,237	65,061	56,999	59,617	-2.5
	출하량(톤)	879,930	1,039,576	979,791	841,513	693,296	479,441	365,635	461,163	-8.8
저농약	농가수(호)	125,835	89,992	57,487	36,025	22,797	16,776	7,599	0	-
	면적(ha)	117,306	83,956	58,108	37,165	22,208	16,679	7,629	0	-
	출하량(톤)	1,369,034	1,053,702	749,136	488,466	371,138	250,348	117,391	0	-
계	농가수(호)	198,918	183,918	160,628	143,083	126,746	85,165	67,617	61,946	-15.4
	면적(ha)	201,688	194,006	172,672	164,289	141,647	100,046	82,764	79,479	-12.5
	출하량(톤)	2,357,774	2,215,521	1,852,241	1,498,235	1,181,425	825,483	577,456	571,217	-18.3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시도별)

- 2015년 총 농가수(저농약 제외)는 60,108호이며, 2016년 총 농가수는 전년대비 3.2% 증가
- 2015년 총 재배면적(저농약 제외)은 75,135ha이며, 2016년 총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5.8% 증가
- 2015년 농산물 총 출하량(저농약 제외)은 460,065톤이며, 2016년 농산물 총 출하량은 24.2% 증가

9) 2009년 대비 2016년 농가수, 면적, 출하량 증감율

2. 인증기관 현황¹⁰⁾

- 인증기관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남·광주 지역에 19개의 인증기관이 분포하여 인증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고(31%), 다음으로 서울·경기지역 13개(21%)이며, 그밖에 지역은 도별 1~6개의 인증기관이 분포
- 인증건 실적 분포
 - 61개 인증기관 중 1,000건을 초과하는 인증을 시행한 기관은 2개(3%)인 반면, 200건 이하의 실적을 보이는 인증기관이 17개(28%)로 나타남
- 인증건 점유율 분포
 - 61개 인증기관의 평균 점유율은 1.6%이며 점유율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점유율 5%를 초과하는 인증기관의 점유율 합계는 12.5%
- 인증농가 실적분포
 - 61개 인증기관 중 2,000 농가를 초과하여 농가 수를 관리하는 기관은 3개(5%), 1,000~2,000 미만의 농가를 관리하는 기관은 23개(38%), 500~1,000 미만의 농가를 관리하는 기관은 16개(26%), 500 농가 이하의 농가 수를 관리하는 기관은 19개(31%)로 나타남

10) 2016년 12월 31일 기준

□ 해외 생산자 인증

- 민간 인증기관 실태 조사에 응한 61개 인증기관 중 10개(16%) 인증기관이 해외에 있는 생산자에 대하여 심사 및 인증을 시행
- 61개 민간 인증기관의 2016년 말 해외 인증 건수는 242건(30,990건 중 0.6%)로서, 민간인증 대부분은 국내 생산자 중심으로 인증을 실시

제3장

시범평가 실시 및 조사방법 검토

1. 시범 평가 개요

1.1. 시범 평가의 필요성

- 선행 연구¹¹⁾에서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평가 지표의 콘텐츠 설정
⇒ 본 연구(후속 연구)에서는 등급제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과 정밀한 배점 교정 작업이 필요
- 등급제 시행에 앞서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반에 대한 자격 요건과 운영
방안의 제시가 필요
- 각 지표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

1.2. 일반 사항

- 선행 연구¹²⁾에서 설정한 평가지표를 검증하기 위해 61개 인증기관¹³⁾

11)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7

12)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7.

13) 연구를 최초로 수행하는 시점에는 62개 인증기관이었으나, 진행과정에 1개의 인증기관이 취

을 대상으로 시범조사 실시

- 해외에 소재하는 3개 인증기관¹⁴⁾은 현지 방문의 어려움으로 본 시범 평가에서는 제외
- 전체 61개 인증기관에서 시범 평가에 필요한 조사표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재무제표 등)
- 23개 지표 중 현장 방문을 통하여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9개 지표¹⁵⁾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전체 인증기관 방문
-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지표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예컨대 대학 산학협력단,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인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중간 점수를 부여
 - 총점이 5점인 경우 3점 부여
 - 해당 기관은 사단법인 2개, 대학 산학협력단 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3개

소되었으며, 최종 61개 인증기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해외 소재 인증기관 3곳 제외

14) 해외에 소재하는 친환경인증기관은 3곳으로 ACO(오스트리아), Kiwa BCS Oko Garantie GmbH(독일), Control Union Certifications(네덜란드)임

15) 지표9, 지표10, 지표11, 지표13, 지표18, 지표19, 지표21, 지표22, 지표23

2. 시범 평가의 과정

2.1. 평가 절차

- 등급제 시범 평가는 조사표 양식 개정에서 평가 지표 개선까지 진행
-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반을 구성

2.2. 조사표 양식 개정 및 설명회 개최

- 선행 연구¹⁶⁾에서 사용된 인증기관 운영 현황 조사표(이하 조사표) 양식을 개정
 ⇒ <부록1. 인증기관 운영 현황 조사표> 참조
- 인증기관에서는 등급제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표 작성 및 현장 평가 시 인터뷰 담당
- 등급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방법과 각 지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2.3. 평가반 구성

- 등급제 시범 평가를 실시할 평가반의 구성 필요. 경영 평가를 포함한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반으로 구성하며 본 연구소에서 지정한 인원으로 평가반을 구성
- 평가반은 인증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로 구성
- 평가반은 평가 업무를 통하여 얻게 된 인증기관의 영업 및 경영에 관

16)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한 정보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유지 서약서¹⁷⁾”를 작성하여 방문하는 전체 인증기관에 제출

- 현장 평가 인원은 현장 평가를 주도하는 선임 평가자와 현장 평가 시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후임 평가자 2인으로 구성

17) 부록9. 비밀유지 서약서

2.4. 경영 평가와 서면 평가

- 전체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등급제 담당자 지정 확인서, 조사표¹⁸⁾ 배포와 회계 관련 자료(15년 기준)¹⁹⁾를 요청
 - 등급제 담당자 지정 확인서, 조사표,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전체 인증기관에서 100% 응답(2017.4.1.까지 접수)
 - 2017년 1월~3월까지 전체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
 - 또한 인증사업 매출액, 인증사업자 교육 등과 같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이하 '친인협')에 요청

- 각 인증기관에 서면조사를 위한 재무제표 등의 회계 관련자료 요청 및 조사표 배포와 작성요령 안내

- 조사표, 회계 관련 자료, 제공 자료 등을 평가 지표에 적용

- 회계에 관련된 자료는 평가를 시행하는 전년도 2015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월1일이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2016년 6월 이전에 종료된 최신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1개 기관)

-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인증기관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에 대한 경영 상태 분석

18) 부록1. 인증기관 운영 현황 조사표

19) 시범 조사 시기가 1~3월로 2016 회계연도의 결산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2015년도의 자료를 이용하게 되었음

2.5. 현장 평가

- 서면 평가 완료 후 현장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인증기관 지정 취소된 곳은 본 평가 대상에서 제외

2.6. 전문가 회의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지표 검토와 평가방법, 득점 기준 교정을 위 평가가 종료된 후 각 1차²⁰⁾, 2차²¹⁾ 전문가 회의 실시
- 전문가 회의 외에도 현장 평가 시 인증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 지표 교정에 반영

20) 2017년 2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국에코써트인증원, (주)비씨에스코리아, (주)지아이, 한국작물연구소(주),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영농조합법인친환경농업연구원, 스마일 친환경(주)에서 참석

21) 2017년 3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에서 참석

3. 평가 방법

3.1. 평가의 범위 설정

○ 조사대상 연도

⇒ 조사대상 연도는 평가 대상이 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모든 평가지표(23개)에 대해 동일한 평가 대상 기간을 적용)

○ 조사대상 조직 범위

⇒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대학총장, 시·군지자체장이 인증기관장으로 지정된 경우 친환경인증 관련 업무의 실질적 기관을 대상으로 함

※ 대학 산학협력단 11개 기관, 시·군 농업기술센터 3개 기관

○ 인증건수/사업자수 범위

⇒ 인증건수/사업자수의 범위에는 농산물,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비식용유기가공품을 포함

3.2. 평가 방법의 기본 원칙 수립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23개 지표에 대하여 효율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평가 방법을 검토

- 기존 평가 방법의 효과성 및 효율성 검토
-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타당성 검토
-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별 평가 방법의 조정

○ 평가 방법의 검토 시 적용한 원칙

- **인증기관의 업무부담 최소화** : 등급제 평가로 인하여 인증기관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기관의 등급제 담당 업무

를 최소화

- 농관원 등 관련 기관의 등급제 관련 업무 경감 : 농관원과 친인협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이터는 실무의 과중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가공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검토
- 평가기관의 효율성 제고 : 평가기관이 제한된 기간 내에 평가를 수행·완료할 수 있도록 효율적 평가 방법 고려

○ 조사표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

- 등급제 시범 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조사표 사전 발송²²⁾
- 조사표 회신은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정보 입력이 최종 확정되는 일자(1월 15일)까지 요청
- 회계 관련 자료 요청

※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자료는 세무관련 기관(국세청, 세무사 등)의 공식 발행이 3월에 이루어져, 금번 조사에서는 부득이 2015년도의 회계 관련 자료를 조사에 이용

⇒ 조사대상연도(전년도)를 기준으로 인증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및 평가기간을 4월 이후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방문일정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원칙

⇒ 방문 일주일전에 등급제 담당자에게 현장 평가 일정과 준비사항에 대한 안내

⇒ 1~2시간 이내에 현장 평가 업무를 종료하여 등급제 시행에 따른 인증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 방문일정 변경에 따른 일정 지연의 방지 :

인증기관이 방문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2) 본 등급제 시범 평가를 위하여 2016년 12월 23일 협조 요청과 조사표 작성 요청을 하였음

○ 인증기관 비협조에 따른 조치

- 정보 미제공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항목은 득점 기준에서 최저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필요

- 평가 거부

인증기관이 등급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득점 기준에서 최저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필요

※ 금번 시범 조사에서 비협조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향후 비협조의 가능성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지표별 평가 방법

4.1. 인증사업 매출비율

표3-1. 인증사업 매출비율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1	인증사업 매출비율	$\frac{\text{인증사업 매출}}{\text{사업자 총매출}} \times 100$ ※ '인증사업 매출'에는 친환경인증만 포함되며 GAP, 해외인증 등 타 산업계 인증은 포함되지 않음 ※ 대학산학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자 총매출'은 회계단위가 구분된 결산자료로 대체 가능

- 인증사업 매출비율은 인증업무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사업자 총매출액에서 친환경인증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

4.2. 인증기관 행정처분

표3-2. 인증기관 행정처분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2	인증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 총 개월 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 농관원으로부터 인증기관이 행정처분 받은 개월 수를 지표에 반영하였으며 인증기관의 인정기준(지정기준) 준수 의지를 평

4.3. 기관 과태료 부과

표3-3. 기관 과태료 부과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3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 합계)

- 인증기관이 행정실무에서의 과실이 발생할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합계를 지표에 반영

4.4. 자체 행정처분 실적

표3-4. 자체 행정처분 실적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frac{\text{행정처분 건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text{연말 인증사업자수})\}/2} \times 100$ ※ 자체 '인증취소' 건수만 해당

- 인증기관이 인증 사업자를 관리하여 행정처분을 처리한 실적으로 사후관리 시 현장 평가의 정확성과 적극성 평가

4.5. 인증 부적합률

표3-5. 인증 부적합률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5	인증 부적합률	$\frac{\text{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text{연중 인증 건수})+(\text{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 \times 100$

- 인증 부적합률은 인증심사의 정확성을 평가

4.6. 사후관리 빈도

표3-6. 사후관리 빈도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6	사후관리 빈도	$(\text{사후관리 건수}) / \{(\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 100$

- 사후관리 빈도는 인증기관이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 횟수이며 인증사업자 관리에 대한 노력을 평가

4.7. 사업자당 투입 인력

표3-7. 사업자당 투입 인력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7	사업자당 투입 인력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text{연초 상근심사원수}) + (\text{연말 상근심사원수})\} / 2\}$

- 상근심사원이 사업자당 심사 및 사후관리에 투입된 노력량으로 상근심사원 당 담당하는 사업자를 나타냄

4.8. 이중체크 적발 비율

표3-8. 이중체크 적발 비율

No.	지표	평가 방법
8	이중체크 적발 비율	$(\text{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생산자수}) / \{(\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 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 이중체크 적발 비율은 농관원이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인증 관정에 관련된 문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하는 인정관리(Accreditaion) 방법임

4.9. 교육훈련 투입량

표3-9. 교육훈련 투입량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9	교육훈련 투입량	$\frac{\text{교육훈련 수료 횟수}}{\{(\text{연초 상근직원수})+(\text{연말 상근직원수})\}/2+(\text{전년도 퇴사자수})}$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 교육훈련 투입량은 인증기관의 심사원 및 직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평가

4.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표3-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No.	지표	평가 방법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 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조사대상 연도 포함한 최근 3년 내의 참가한 워크숍 및 교육 인정

- 인증기관장(사업체의 대표)의 인증에 대한 관심을 평가하는 항목이며, 공식 행사나 교육 등에 참여한 기록이나 문서를 통하여 평가함

4.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표3-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No.	지표	평가 방법
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연말 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 (연말 상근심사원수) ※ 조사대상 연도의 9월 이전에 입사한 심사원에 한함

- 상근심사원이 해당 인증기관에 근속으로 근무한 업무 경력의 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인적자원의 가치를 평가함

4.12. 인증 갱신율

표3-12. 인증 갱신율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12	인증 갱신율	(연간 인증갱신건수)/(국내 인증건수)

- 전년도 인증사업자 중에서 동일 인증기관에 인증을 갱신한 비율이며,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사업자의 만족도를 나타냄

4.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표3-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No.	지표	평가 방법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인증사업자교육 연 인원)/[(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 실적에 한함 ※교육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 인증기관이 인증기준, 규정, 주의사항 등을 인증사업자에게 교

육하는데 투여한 시간을 말함

4.14. 인증 건수

표3-14. 인증 건수 지표

No.	지표	평가 방법
14	인증 건수	(총 인증 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건수 합계

- 인증 건수는 인증실적의 대표적인 지표이며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식품의 전체 건수의 합계임

4.15. 인증 사업자 수

표3-15. 인증사업자수

No.	지표	평가 방법
15	인증사업자수	(인증사업자 총수) ※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하나)로 간주

- 인증 건수는 인증실적의 대표적인 지표이며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식품의 전체 인증 사업자 수

4.16. 전년도 매출액

표3-16. 전년도 매출액

No.	지표	평가 방법
16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친환경 인증사업 매출 총액)

- 매출액은 인증기관의 규모화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식품의 전체 인증사업에 대한 매출액

4.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표3-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No.	지표	평가 방법
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당기말\ 인증사업자수) / (전기말\ 인증사업자수)\} * 100 - 100$ ※ 친환경인증사업자 증가율

- 인증사업자수 증가율은 인증기관의 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친환경인증사업자에 대한 증가율을 평가

4.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표3-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No.	지표	평가 방법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조사대상 연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 포함

- 인증기관이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재, 기술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쟁력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함

4.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표3-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No.	지표	평가 방법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 인증기관의 국제기준(ISO17065)에 따른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인증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

4.20. 부채비율

표3-20. 부채비율

No.	지표	평가 방법
20	부채비율	$\frac{[(\text{유동부채})+(\text{고정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 최하점 부여

-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4.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표3-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No.	지표	평가 방법
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frac{(\text{전년도 상근심사원 인건비 지출액})}{(\text{전년도의 근무개월수})}$ ※ 15일 이전 입사한 경우 해당 월부터 근무개월을 인정, 16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월을 근무개월로 인정하지 않음

- 매출액 대비 상근심사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심사원의 업무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

4.22. 상근심사원 퇴사율

표3-22. 상근심사원 퇴사율

No.	지표	평가 방법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한 상근심사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인증기관이 고용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

4.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표3-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No.	지표	평가 방법
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관할지역 인증건수)/(총인증건수)*100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광역지역(시·도)의 인증이 차지하는 비율로 관할지역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의 9개 지역으로 분류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한 자치도와 같은 구역으로 분류

4.24. 추가 지표 제안

○ 추가 지표 개발 배경

- 친환경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제도의 전파, 개발,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또한, 인증기관이 자발적으로 후진양성에 참여하여 심사원의 역

- 할 강화와 제도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
- 친환경인증제도 발전에 매우 유효하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추가
 -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기여도는 친인협 등 친환경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강사 등을 협조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에 표3-24과 같이 가점 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지표24.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기여도

표3-24.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기여도

No.	지표	평가 방법
24	친환경인증 제도에 대한 기여도	<p>(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강사 보유수)</p> <p>※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표 3] 2.가.1)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로서 전년도에 3회 이상 출강한 경우에 인정</p> <p>※ 조사대상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 내 강사로 활동한 경우</p>

5. 지표별 평가 방법의 최종 도출

○ 시범 평가에 따른 교정 결과는 표3-25와 같이 최종 도출

표3-25. 인증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최종 교정 결과)

※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조사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No.	지표	평가 방법
1	인증사업 매출비율	$\frac{\text{인증사업 매출}}{\text{사업자 총매출}} \times 100$ ※ '인증사업 매출'에는 친환경인증만 포함되며 GAP, 해외인증 등 타 산업계 인증은 포함되지 않음 ※ 대학산학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자 총매출'은 회계단위가 구분된 결산자료로 대체 가능
2	인증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 총 개월 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3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 합계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frac{\text{행정처분 건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times 100$ ※ '자체 인증취소' 건수만 해당
5	인증 부적합률	$\frac{\text{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text{연중 인증 건수}) + (\text{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 \times 100$
6	사후관리 빈도	$\frac{\text{사후관리 건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times 100$
7	사업자당 투입 인력	$\frac{\text{연말 인증사업자수}}{\{(\text{연초 상근심사원수}) + (\text{연말 상근심사원수})\} / 2}$
8	이중체크 적발 비율	$\frac{\text{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사업자 수}}{\{(\text{연초 인증사업자수}) + (\text{연말 인증사업자수})\} / 2} \times 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9	교육훈련 투입량	<p>(교육훈련 수료 횟수)/[{(연초 상근직원수)+(연말 상근직원수)}/2+(전년도 퇴사자수)]</p> <p>※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에 한함</p> <p>※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p>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p>(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p> <p>※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p> <p>※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p> <p>※ 조사대상 연도를 포함한 3년 내 참가한 워크숍 및 교육 인정</p>
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p>(연말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 (연말상근심사원수)</p> <p>※ 조사대상 연도의 9월 이전에 입사한 심사원에 한함</p>
12	인증 갱신율	<p>(연간 국내 인증 갱신건수)/(연초 국내 인증건수)</p>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p>(인증사업자교육 연 인원)/[{(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p> <p>※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 실적에 한함</p> <p>※ 교육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p>
14	인증 건수	<p>(총 인증 건수)</p> <p>※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건수 합계</p>
15	인증 사업자 수	<p>(인증사업자 총수)</p> <p>※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하나)로 간주</p>

16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당기말 인증사업자수)/(전기말 인증사업자수)}*100-100 ※ 친환경인증사업자 증가율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조사대상 연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 포함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20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100 ※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 최하점 부여
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전년도 상근심사원 인건비 지출액)/(전년도의 근무개월수) ※ 15일 이전 입사한 경우 해당 월부터 근무개월을 인정, 16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월을 근무개월로 인정하지 않음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한 상근심사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관할지역 인증건수)/(총인증건수)*100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24 (추가)	친환경인증제 도에 대한 기여도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강사 보유수) ※ [별표 3]인증심사원 자격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2.가.1)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이며 전년도에 3회 이상 출강한 경우에 인정

6. 기타 고려 사항

6.1. 평가 시기

- 인증기관 등급 평가를 연초에 실시하는 경우 회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평가 시기를 전년도 회계자료가 발행되는 3월 이후 평가 실시

-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실시연도의 종료 시점이 가까워져 ‘전년도’로 설정한 조사대상연도의 평가 의의가 희석됨

⇒ 개선방안: 조사대상 연도(조사 실시연도의 전년도)의 회계 자료를 평가하고, 전년도 평가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4월 이후 6월 이전에 평가를 실시

6.2. 등급 평가 업무의 과중

- 인증기관

- 사전 조사표 작성, 현장조사용 자료 준비, 현장조사 등 등급 평가에 소요되는 투입 시간에 대한 부담 가중

- 농관원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 및 가공하는데 과도한 업무량이 투입됨. 평가기관에 일시적으로 임시ID 제공하여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 농관원의 업무 과중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나 인증기관의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의 보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평가기관

- 60개 이상의 인증기관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농관원으로부터 수집하는 시간과 수집 후 가공하는 시간으로 조사의 진행 기간이 과도하게 소요

⇒ 개선방안:

- (1) 농관원의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평가지표의 공식에 따라 데이터 및 지표별 점수 추출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음
- (2) 평가기관은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인증기관과 농관원으로부터 수집한 로데이터를 입력할 때, 평가지표의 공식에 따라 데이터 및 지표별 점수 추출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음

6.3. 증빙자료 검증 소요시간

- 현장평가는 인증기관과 농관원이 제공하는 자료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당
- 예컨대, 지표13의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은 최대 수백 건 이상의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하였더라도, 교육의 실효성과 참가인원의 정확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자료 점검은 교육 건수에 비례하여 시간이 투입

⇒ 개선방안: 증빙자료가 많은 지표는 자료의 전부가 아닌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의 비율에 따라 전체 자료를 인정하는 통계학적 추정의 논리를 적용

제4장 득점 기준의 조정 및 최종 평가 결과

1. 득점 기준 조정의 필요성

- 선행연구²³⁾에서 설정한 평가 지표로 61개 인증기관을 평가
- 그 결과 인증기관은 ‘우수’ 9개, ‘양호’ 23개, ‘보통’ 25개, ‘미흡’ 4개로 나타남

표4-1. 인증기관 등급 분포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계
등급 분류 기준	80~100	70~79	60~69	60 미만	
기관 수	9	23	25	4	61
비율(%)	15	38	41	6	100

- 전체 인증기관에서 53%는 ‘양호’ 이상에 해당. 지표마다 점수가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 이는 비대칭분포(asymmetric distribution)로 평가 지표로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득점 기준 조정이 필요

23)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2016

2. 교정 후 최종 평가 지표

○ 표4-2과 같이 인증기관 평가 지표가 최종 도출

표4-2. 인증기관 평가 지표 최종 교정 내역

※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조사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No.	지표	평가 방법	득점 기준
1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사업 매출)/(사업자 총매출)*100 ※ '인증사업 매출'에는 친환경인증만 포함되며 GAP, 해외인증 등 타 산업계 인증은 포함되지 않음 ※ 대학산학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자 총매출'은 회계단위가 구분된 결산자료로 대체 가능	80% 이상 5
			60~80% 미만 4
			40~60% 미만 3
			20~40% 미만 2
			20% 미만 1
2	인증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 총 개월수) ※ 농관원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이 공지·등록된 날짜 기준	1개월당 -1 감점
3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 합계)	100만원당 -1 감점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행정처분 건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자체 인증취소' 건수만 해당	1.5% 초과 5
			1.0% 초과~1.5% 이하 4
			0.5% 초과~1.0% 이하 3
			0%초과~0.5% 이하 2
			0% 이면 1
5	인증 부적합률	(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연중 인증 건수)+(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00	2.0% 이상 5
			1.5%~2.0% 미만 4
			1.0~1.5% 미만 3
			0.5%~1.0% 미만 2
			0.5% 미만 1
6	사후관리 빈도	(사후관리 건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90% 이상 7
			75~90% 미만 6
			60~75% 미만 5
			45~60% 미만 4
			30~45% 미만 3
			15~30% 미만 2
			15% 미만 1
7	사업자당 투입 인력	{(연말 인증사업자수)/[{(연초 상근심사원수)+(연말 상근심사원수)}/2]}	50 미만 7
			100 미만 6
			150 미만 5
			200 미만 4
			250 미만 3
			300 미만 2
			300 이상 1

8	이중체크 적발 비율	(이중체크에 의해 인증취소된 사업자 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 / 2] * 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0.5% 미만 7
			0.5~1% 미만 6
			1~1.5% 미만 5
			1.5~2% 미만 4
			2~2.5% 미만 3
			2.5~3% 미만 2
			3% 이상 1
9	교육훈련 투입량	(교육훈련 수료 횟수)/[{(연초 상근직원수)+(연말 상근직원수)} / 2 + (전년도 퇴사자수)] ※ 농관원 고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별표3의 2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은 제외	2.0 이상 5
			1.5~2.0 미만 4
			1.0~1.5 미만 3
			0.5~1.0 미만 2
			0.5 미만 1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장의 인증 관련 교육 등 수료 횟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주관자가 발행한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조사대상 연도를 포함한 3년 내 참가한 워크숍 및 교육 인정	2회 이상 참가 3
			1회 참가 2
			미참가 1
11	상근심사 원 근속연수	(연말상근심사원 근속 개월수 총합)/ (연말상근심사원수) ※ 조사대상 연도의 9월 이전에 입사한 심사원에 한함	3년 이상 7
			2.5~3년 미만 6
			2~2.5년 미만 5
			1.5~2년 미만 4
			1~1.5년 미만 3
			0.5~1년 미만 2
			0.5년 미만 1
12	인증 갱신율	(연간 국내 인증 갱신건수)/(연초 국내 인증건수)	0.8 이상 5
			0.6~0.8 미만 4
			0.4~0.6 미만 3
			0.2~0.4 미만 2
			0.2 미만 1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인증사업자교육 연 인원)/[{(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 / 2] * 100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 실적에 한함 ※ 교육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에 한함	90% 초과 5
			60%초과~90%이하 4
			30%초과~60%이하 3
			0%초과~30%이하 2
			0%이면 1

14	인증 건수	(총 인증 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건수 합계	800건 이상 5
			600~800건 미만 4
			400~600건 미만 3
			200~400건 미만 2
			200건 미만 1
15	인증 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총수) ※ 농산물 및 축산물의 단체인증인 경우 농가 1인은 인증사업자 1(하나)로 간주	2,000명 이상 5
			1,500~2,000명 미만 4
			1,000~1,500명 미만 3
			500~1,000명 미만 2
			500명 미만 1
16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8억원 이상 5
			6~8억원 미만 4
			4~6억원 미만 3
			2~4억원 미만 2
			2억원 미만 1
17	인증사업 자수 증가율	{(당기말 인증사업자수)/(전기말 인증사업자수)}*100-100 ※ 친환경인증사업자 증가율	10% 초과 3
			-10~10% 2
			-10% 미만 1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수료증 총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의 포럼, 워크숍, 교육 등 공식 행사, IOIA, ISO17065, ISO19011, IFOAM, USDA-NOP, EC834/2007, 유기JAS, 중국유기농 인증에 대한 공식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조사대상 연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참가확인 문서 또는 수료증에 한함 ※ 인증기관장의 교육 포함	4건 이상 5
			3건 4
			2건 3
			1건 2
			0건 1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3점 가점
20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100 ※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 최하점 부여	100% 미만 3
			100~200% 2
			200% 초과 1
21	상근심사 원 인건비 비중	(전년도 상근심사원 인건비 지출액)/(전년도의 근무개월수) ※ 15일 이전 입사한 경우 해당 월부터 근무개월을 인정, 16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월을 근무개월로 인정하지 않음	4백 이상 5
			3백~4백만원 미만 4
			2백~3백만원 미만 3
			1백~2백만원 미만 2
			1백만 원 미만 1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수)*100 *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한 상근심사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20% 미만 5
			20~40% 미만 4
			40~60% 미만 3
			60~80% 미만 2
			80% 이상 1
23	관할지역 인증 비율	(관할지역 인증건수)/(총인증건수)*100 * 공식 지정된 지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광역 행정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60% 이상 3
			0~60% 미만 2
			0~30% 미만 1
24	친환경인 증제도에 대한 기여도 (추가)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강사 보유수) * [별표 3]인증심사원 자격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2.가.1)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이며 전년도에 3회 이상 출강한 경우에 인정	1명당 1점 (최대 3점)

3. 최종 평가 결과

3.1. 인증기관별 총점의 분포

- 인증기관 등급 평가 지표 교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총점 평균은 65.6 점, 총점 최고 점수는 84점, 최저점수는 51점
- 교정 후 등급 분포는 ‘우수’ 2개(3%), ‘양호’ 14개(23%), ‘보통’ 30개(49%), ‘미흡’ 15개(25%)로 분포
- 교정 전 등급 분포와 비교했을 때 각 ‘우수’ 7개, ‘양호’ 9개 기관이 줄어들었으며 ‘보통’ 5개, ‘미흡’ 11개 기관이 증가

표4-3. 교정 전·후 등급 평가 결과 등급 분포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계
등급 분류 기준		80~100	70~79	60~69	60 미만	
교정 전	기관 수	9	23	25	4	61
	비율(%)	15	38	41	6	100
교정 후	기관 수	2	14	30	15	61
	비율(%)	3	23	49	25	100

제5장 인증기관 등급제 제도화 방안

1. 등급제 시행의 목적

- 등급제 시행은 인증기관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및 우수한 인증기관 지원을 목적을 함을 나타낼 필요가 있음

2. 평가기관의 운영 원칙

2.1. 평가기관의 지정

- 등급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등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등급 평가기관의 자격 요건은 인증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없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함

2.2. 평가자

- 평가를 실시하는 인력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며, 아래의 조건에 적합한 자로 할 것을 제안함
 - (1) 평가의 시작일 전 1년 이내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3) 인증의 일반론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 평가반의 구성 : 인증기관 평가 시에는 위 항의 자격 요건에 맞는 평가자 2인으로 구성하여 투입함이 타당함

3. 등급결정심의위원회

3.1. 평가기관과 분리된 심의위원회의 구성

- 등급평가는 평가기관에서 담당하되, 평가의 과정에 대한 승인 및 최종 등급의 확정은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
- 심의위원회의 소집, 보고, 기록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간사는 평가기관의 장이 담당

4. 평가의 원칙과 절차

4.1. 일반 원칙

- 이해관계의 기피
평가기관의 평가반 및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하여 평가 및 심의에서 기피하여야 함
- 기밀유지의 원칙
평가기관과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평가 업무를 통하여 얻게 된 인증기관의 영업 및 경영에 관한 정보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함

○ 평가 대상의 회계 연도

인증기관의 평가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는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

○ 평가 시행 시기

평가반의 조사 및 평가는 4월1일 이후에 시작하여 6월30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연도에 대한 최적 조사 시기에 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 정보수집의 방법 규정

평가반은 인증기관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1)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 조사표 : 평가기관이 인증기관에게 조사표를 배부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
- (2)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항목 별로 필요한 근거 자료의 원본을 열람
-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추출 및 가공한 자료의 이용 : 농관원의 효율적인 자료 추출을 위하여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의 프로그래밍 필요

○ 평가의 계획

평가반은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인증기관과 소통할 필요가 있음. 평가 계획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평가의 통보
- 체류 시간
- 일정의 변경

○ 자료 제공의 거부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된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방법이 취해져야 함. 다음 중 한가지 방법을 채택하는 방안

- 1안: 해당 항목에 대하여 최하점 부여 (주로 1점이 됨)
- 2안: 해당 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

○ 등급제의 거부 및 비협조

- 인증기관이 등급제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해당 인증기관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방안 고려

○ 평가의 보고

- 평가기관이 인증기관 전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을 때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등급 결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규정이 필요. 평가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평가반의 구성
- ② 평가기간(현장체재시간)
- ③ 각 지표별 획득 점수, 계산 방식, 근거 자료 등
- ④ 조사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 등급의 결정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등급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재석인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급을 결정

○ 이의제기의 기회 제공

인증 등 일반적인 평가 절차와 같이, 피평가자에게는 이의제기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이의제기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이의제기 절차의 통지

- (2) 이의제기 접수 및 추진 과정에 대한 안내
- (3) 이의제기 접수 시 적정한 조치를 추진할 담당자의 지정
- (4) 조치 후의 보고 체계

5. 평가 결과의 적용 방법

○ 평가가 완료된 후에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5-1. 등급제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 방안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분류기준	80점 이상	70~79	60~69	60 미만
지원방법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농관원 지도점검	2년	연1회	2년 3회	연2회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공시	“우수인증기관” 표시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인증서에 표시	“우수인증기관” 표시	미표시	미표시	미표시

제6장 결론 및 기타 고려사항

1.3. 등급 평가 결과

- 교정된 23개 평가지표에 따른 인증기관의 총점 평균은 65.6점, 총점 최고 점수는 84점, 최저점수는 51점
- 등급 분포는 ‘우수’ 2개(3%), ‘양호’ 14개(23%), ‘보통’ 30개(49%), ‘미흡’ 15개(25%)로 분포
- 등급별 총점 평균은 ‘우수’ 82점, ‘양호’ 73.9점, ‘보통’ 65점, ‘미흡’ 56.7점

표6-1. 최종 등급 분포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계
등급 분류 기준	80~100	70~79	60~69	60 미만	
기관 수	2	14	30	15	61
비율(%)	3	23	49	25	100

2. 경영 평가 결과

2.1. 경영 평가 분석

- 전체 61개 인증기관 중 36개 영리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평가 분석을 실시
- 중소기업 전산업과 유사업종 서비스 산업을 택하여 비교
- 개별 인증기관 평가서에는 전체 인증기관의 경영 평균을 개별 인증기관과 비교

2.2. 성장성 분석

- 성장성은 자산의 총액에 대한 증가율로 기업의 성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로 인증기관의 경영규모와 기업 활동의 성과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경쟁력이나 미래의 수익 창출능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냄²⁴⁾

2.3. 안정성 분석

- 안정성은 기업의 장기지급능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로 구분됨.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이 높고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가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음

2.4. 수익성 분석

- 수익성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 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을 분석

24) 자료 : KOSIS, 통계설명자료

2.5. 인증기관 경영 평가 결과

-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양호한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인증산업이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이익창출이 높은 산업이 아닌, 오히려 경영 규모가 영세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3. 해외 소재 인증기관의 등급제 적용 방안

3.1. 해외 소재 인증기관에 대한 등급제 적용의 필요성

- 국내 인증기관에 대해서만 등급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해외 소재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도 필요
- 일부 지표는 해외 소재 인증기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현지 사정에 따라 평가 방법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 예컨대, ‘관할지역 인증 비율’ 지표에서 관할지역 범위는 인증기관 소재 시·군에 해당하지만 해외 소재 인증기관의 경우 관할지역 범위를 국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

3.2. 선제 조건

- 등급 평가에 필요한 기본 정보 사항은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 소재 인증기관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필요
- 해외 소재 인증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문사이트 운영이 필요
- 국내 인증기관과 동일하게 현장 방문이 필요하므로 해외 출장에 대한 경비 확보 필요(호주, 독일, 네덜란드)

4. 등급제 운영 고시안

○ 등급제 제도화를 위한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육성을 위한 등급제 운영 요령 (고시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에서 제37조의5에 지정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육성을 위한 등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4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농산물 등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인증기관등급제”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경영 상태, 신뢰성, 역량 등을 평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등급을 분류하여 공시, 지원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절차와 규칙을 말한다.
3. “우수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등급별로 분류하였을

때 가장 상위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을 말한다.

4. “평가기관”이라 함은 인증기관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별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방법과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등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함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인증기관의 등급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등급평가보고서”는 평가기관이 등급결정심의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하여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7. “등급분류기준”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평가한 점수의 총합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때의 기준이 되는 총점의 수를 말한다.
8. “평가방법”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평가하는 항목들 중 각각의 항목을 평가하는 계산식 또는 원칙을 말한다.
9. “득점기준”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평가하는 항목들 중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배점”이라 함은 인증기관을 평가하는 항목들 중 각각의 항목에 배정한 최고 점수를 말한다.
11.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유기농산물등을 관리하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고시를 통한 등급제는 국내에 본사가 소재하는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2장 등급 평가 기관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제5조(지정원칙)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평가의 시작일 전 1년이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3. 인증의 일반론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제6조(평가반) ①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5조의 제1항에서 제3항에 적합한 2인의 평가반을 구성한다.

② 평가반에는 선임평가자를 선정하며, 선임평가자는 평가의 계획과 결과보고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7조(기밀유지) ① 평가기관은 평가 업무를 통하여 얻게 된 인증기관의 영업 및 경영에 관한 정보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의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제8조(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인
2. 사단법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1인
3. 생산자단체 1인

4. ISO17065의 전문인 1인

5. 그밖에 공정하게 등급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 1인

제9조(등급결정심의위원장) 등급결정심의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1인이 맡는다.

제10조(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간사)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소집, 보고, 기록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간사는 평가기관의 장이 맡는다.

제11조(기밀유지) 등급결정심의위원은 심의 업무를 통하여 얻게 된 인증기관의 영업 및 경영에 관한 정보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평가방법 및 기준

제12조(평가 대상의 회계연도) 인증기관의 평가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는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평가의 시기) 평가반의 조사 및 평가는 5월1일 이후에 시작하여 6월30일 이전에 완료한다.

제14조(정보수집) 평가반은 인증기관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 조사표(평가기관이 인증기관에게 조사표를 배부한 후 14일 이내에 제출)
2.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항목 별로 필요한 근거 자료의 원본을 열람
3.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열람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분석

제15조(평가의 계획) ① 평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일의 7일 전에 방문의 목적과 필요한 자료를 열거하여 인증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게 평가계획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때에는 방문기간을 3시간 이하로 계획한다.

③ 인증기관이 방문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의 방법) 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 빠짐없이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항목은 최하점을 부여한다.

② 평가 항목과 배점은 별표X(별도 작성)을 따른다.

③ 평가 항목별 평가방법과 점수부여는 별표X(별도 작성)를 따른다.

④ 인증기관 등급 부여는 별표X(별도 작성)을 따른다.

제17조(등급제의 거부 및 비협조) ① 인증기관이 등급제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해당 인증기관에게 최하 등급을 부여한다.

② 인증기관이 조사표 제출의 지연 등, 평가기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평가지표 중 일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 늦어져 조사의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에 대해 최하점 처리한다.

제18조(평가의 보고)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등

급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 ① 평가반의 구성
- ② 평가기간(현장체재시간)
- ③ 각 지표별 획득 점수, 계산 방식, 근거 자료 등
- ④ 조사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제19조(등급의 결정)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등급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재석인원 전원의 동의 하에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결정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등급결정심의위원장이 등급을 결정한다.

제20조(이해관계의 기피) 등급결정심의위원 중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증기관과 심의 전 1년 이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에게 자신을 해당 심의 건으로부터 배제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1조(등급별 지원방안) 인증기관 등급의 활용은 별표X(별도 작성)을 따른다.

제6장 이의제기

제22조(이의제기 정책)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에게 평가 지침, 평가 절차 등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제기 절차 수립) 평가기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제기의 접수) 평가기관은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 이를

기록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담당자의 지정) 평가기관은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하여 당해
건과 관계되는 평가반 등의 직원을 배제한 자 중 1인을 담당자로
지정한다.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외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제기 처리) 이의제기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처리 계
획을 세우고, 처리 후에는 이의를 제기한 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에게 보고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

2017년 4월 인쇄

2017년 4월 발행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747-01

편저 · 발행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연구기관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관양두산벤처다임 1108

TEL:031-424-9792 FAX:031-424-9793

이 간행물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시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제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